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현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진료상의 주의의무 측면)

의사의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에는 의사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과실 판정의 기초가 되는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이다.

1. 예견의무와 회피의무

의료과오사건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 되어야 한다.(대법원11984.선고83도 3199)

2. 과실판단의 기준

- ① 의학의 수준
- ② 의료제도
- ③ 허용된 위험의 법리
- ④ 신뢰의 원칙

- ⑤ 의료환경(의료의 긴급성과 지역차)
- ⑥ 의료의 재량성
- ⑦ 의료의 곤란성
- ⑧ 환자의 특이 체질
- ⑨ 그 밖의 의료측의 특수 사정과 같은 구체적 기준(대법원 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이 의료의 긴급성과 곤란성, 환자의 특이체질, 지역차등은 주의의무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문제는 의사가 그 특이체질을 예견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나쁜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 했느냐 하는 주의의무라 하겠다. 즉 특이체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문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판례

■ 판례 1.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6.12선고 83도 3199판결)

■ 판례 2.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기

관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대법원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

■ 판례 3

알레르기성 자반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장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하였으나 환자의 병증진단에 최선을 다하고 의학상 합리적인 치료를 하여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면 과실책임이 없다.(서울고법1975.12.5선고 75나1060판결)

■ 판례 4.

수술후 파상풍은 수술에 있어 일반적인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수술후 발생하는 파상풍은 대부분 불철저한 소독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및 위 망인에게는 수술부위 이외에 파상풍의 감염 경로가 될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에게 선행사인이된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선행사인이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 기초검사의 시행,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후 환자관리의 철저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된 것이라 추정된다.(서울지법동부지원 1989.6.14선고 88

가합 2890판결)

■ 판례 5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 카1469 판결)

■ 판례 6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 카1469 판결)

■ 판례 7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당연히 질병이 치료가 안되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8

주사액의 농도와 주사시간에 따라 자칫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염화칼리 주사를 함에 있어 의사가 입회 하지도 않고 간호사에게만 처방지시하여 환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것은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이다.(대법원1981.6.23선고 81다 413판결)